

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1132
------------	------

2016년 6월 21일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- 2016. 4. 19 강구덕 의원 발의(찬성자 9명)(2016. 4. 20 회부)

2. 제안이유

-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 “한 때에는”을 “한 경우에는”으로 하고 “반경”을 “반지름”으로 하며 “에 불구하고”를 “에도 불구하고”로 하고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며 “관계법령”을 “관계 법령”으로 하고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하며 “당해”를 “해당”로 하고 “제반사항”을 “모든 사항”으로 하며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 함.(안 제6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책적 쟁점사항은 없음.
- 참고로,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, 한 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,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, 명확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 나감으로써 한 차원 높은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,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려는 것임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 “한 때에는”을 “한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반경”을 “반지름”으로 하고 “에 불구하고”를 “에도 불구하고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관계법령”을 “관계 법령”으로 하고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며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하고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제반사항”을 “모든 사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지구개발계획의 고시)</p> <p>① 시장은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,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및 해당 자치구에 비치하여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.</p> <p>1~2. (생략)</p> <p>3. 지구개발계획의 개요 가~라. (생략) 마. <u>기타</u> 필요한 사항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고시를 <u>한 때에는</u> 「주택법」(법률 제6916호) 부칙 제9조 및 「주택건설촉진법」(법률 제6852호) 제20조에 따라 결정·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지구개발계획의 고시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가~라. (현행과 같음) 마. <u>그 밖에</u>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한</u> <u>경우에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토지이용계획의 기준)</p> <p>① 근린주구는 <u>반경이</u> 400미터 이내이고 공동주택의 계획건설세대수는 1,000세대 이상 3,000세대를 기준으로 구획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특수성이</p>	<p>제7조(토지이용계획의 기준)</p> <p>① ----- <u>반지름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나 주변여건(도로구획, 생활권역, 행정구역)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⑤ 시장은 지구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준공되어 사용 중인 단지 내에 복리시설 및 주거복합건축물이 있는 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(변경)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<u>불구하고</u> 기존 복리시설 및 주거복합건축물의 위치를 분구중심 또는 지구중심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에도 불구하고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9조(지구안의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범위)</p> <p>① 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별표 2의 <u>범위 안에서</u> 계획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9조(지구안의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범위)</p> <p>① ----- -- <u>범위에서</u>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건축물의 규모)</p> <p>① 지구안의 건축물의 규모는 별표 3에 따라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. 다만, 별표 3에 따른 세대수 산정시 지구면적은 주거용지와 중심시설 용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, 지구중심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의 규모·계획내용 및 주변 도시계획 현황과 주거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<u>관계법령에서</u> 정하는</p>	<p>제10조(건축물의 규모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계 법령</u>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기준에 적합한 <u>범위 안에서</u>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 이외에 지구안의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<u>종</u> 세분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, 건축물의 배치·인동거리·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당해</u> 지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용적률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5조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대해서는</u>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공원의 설치기준)</p> <p>① 근린공원은 근린주구당 1개소 이상을 계획하여야 하며, 그 면적은 10,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주민접근성, 주민이용도, 주변여건 등 <u>제반사항</u>을 고려하여 유치거리 500미터 이내에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린공원 규모 이상의 공원(설치할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된 경우를 포함한다)이 있거나, 녹지면적이 해당 근린주구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11조(공원의 설치기준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모든 사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